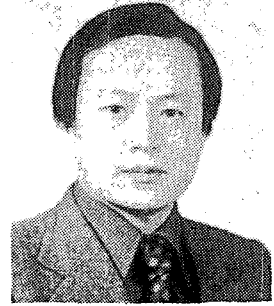




# 排出賦課金制의 效率的인 施行



具 然 昌  
〈本協會編輯委員〉  
〈경희大 法科大學長〉

1977年 12月 環境保全法이 제정된 후, 法施行過程에서 제기된 問題點을 해결하고 未備된 點을 補完하기 위해 1979年과 1981年 두 차례에 걸쳐 同法의 改正·補完이 있었다. 그 중 특히 1981年 12월의 改正에서 採擇된 排出賦課金制度는 法의 實效性 提高와 關連하여 특히 주목을 끄는 제도이다.

이 制度가 採擇되기 이전의 環境保全法下에서는,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排出을 하기 때문에 改善命令을 내렸다 할지라도 부여된 改善期間 동안 계속하여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排出을 할 수 있었음은 물론, 흔히 改善期間을 연장하여 기준초과의 排出을 했었던 것이 實情이었다. 또한 施設移轉命令을 받고서도 移轉할 순간까지는 역시 계속하여 기준초과의 排出을 할 수 있었다.

물론 環境保全法上으로는 허여된 改善期間 안에 改善을 하지 않으면 操業停止命令, 設置許可의 取消, 더 나아가 刑事處罰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 확보수단이 마련되어 있었다.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政治的·社會的 내지는 經濟的인 複雜한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 확보수단이 제대로 實施될 수 없었던 것이 現實이었다. 따라서 環境保全法의 실효성 확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 주었던 것 같다.

이와 같은 實情下에서 經濟的 收支計算에 특히 민감한 排出業體로 하여금 스스로 改善 내지 移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바로 排出賦課金制度인 것이다. 이 制度의 운영 여하에 따라 비교적 實效성이 낮은 편이었던 環境保全法의 面목을 一新시켜 줄 수 있다는 點에서 우선 排出賦課金制度의 採擇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.

排出賦課金制는 環境規制方法論의 측면에서 볼 때, 法的規制, 補助金制와 대응되는 이른바 賦課金制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. 賦課金制에는 排出賦課金制 이외에도 公害稅 내지 環境稅制度 그리고 汚染權販賣制度 등이 있다.

물론 排出賦課金制度 立法例에 따라 그 內容이 다종다양하지만, 우리 法制가 採擇하고 있는 것은 美國 콘네티컷州 法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일종의 微罰的인 색채를 띠는 것이다. 이 制度는 法的規制에 代置될 수 있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賦課金制의 複雜性과 실시 곤란성을 회피하면서도 法的規制의 非效率性을 시정함으로써 보다 效率的이고도 經濟的인 汚染規制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안· 채택된 것이다.

따라서 環境保全法은 改善命令, 操業停止命令, 許可取消 및 處罰과 같은 강력한 法的規制手段을 갖추어 排出賦課金制라는 企業의 利潤추구의 論理에 바탕을 둔 經濟的인 規制確保手段을 마련함으로써 그 規制手段을 보다 擴充시킨 것이다. 더구나 排出賦課金の 징수를 國稅徵收法上的 強制徵收의 例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制度的 保障까지 마련하고 있다. 뿐만 아니라 徵收된 排出賦課金은 環境汚染防止基金의 財源造成에 쓰지 않으면 안되게 함으로써 環境保全法의 목적달성에 기여토록 한 점 또한 특기할 만한 點이다.

그러나 이렇듯 빼어난 論理와 構造를 갖춘 排出賦課金制가 입법취지대로 实效性있게 실시될 수 있을 것인가는 적잖게 의문시 된다. 지금까지 環境保全法의 实效性을 감쇄시켜 왔던 政治的·社會的·經濟的인 制約인이 꼭같이 排出賦課金制의 실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. 排出賦課金은 결국 汚染防止施設에의 投資金을 方式을 달리하여 轉化시킨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.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 防止施設에의 投資를 저해하는 制約인은 곧 排出賦課金の 賦課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. 뿐만 아니라 排出賦課金制는 法的規制手段에 비해 그 실시가 複雜하기 때문에 이 制度的 施行에는 技術的인 問題까지 추가되어 그 效率的인 실시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.

따라서 排出賦課金制의 实效性 나아가 環境保全法의 实效性을 제고시켜 法 본래의 目的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排出賦課金制를 보다 융통성있게 그리고 의지적으로 制度的 運用을 할 것이 요청된다. 이미 1983年 9月부터 施行된 우리의 排出賦課金制는 그 實施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國民 1人當 國民所得이 2000 弗이 못되는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결코 전면적인 環境優先主義의 環境政策이 实效性있게 실시될 수 없다는 點을 먼저 상기하여야 하고, 排出賦課金制의 실시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. 따라서 排出賦課金制의 실시도 현저히 汚染된 地域에 대하여 현저하게 위험한 대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. 排出賦課金制의 실시에 관하여 몇 가지 一般的인 指針을 제시하고 싶다.

첫째, 排出賦課金制는 각 地域의 環境基準과의 關連하에서 실시되지 않으면 아니된다. 당해 地域의 汚染狀態가 環境基準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. 물론 全國的으로 시행하면서도 排出賦課金の 算定方法 및 基準을 설정함에 있어 地域別 賦課係數라던가 排出許容基準超過率別 賦課係數 등에 차등을 두어 실시할 수도 있다. 그러나 현재의 技術的·行政的인 環境行政能力에 비추어 볼 때 전국적인 시행보다는 일정한 地域, 예컨대 特別對策地域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.

둘째, 特別對策地域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排出賦課金制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.

1988年 올림픽 개최와도 關連되는 것으로 서울特別市를 特別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環境保全法上的 嚴格한 環境規制對策을 강구함과 함께 排出賦課金制의 積極적인 시행이 현시점에서부터 요청된다.

셋째, 排出賦課金制의 시행을 그 賦課金の 算定基準을 정함에 있어 다양성을 주어 보다 융통성 있는 실시를 도모함이 要求된다.

네째, 排出賦課金制의 실시에 있어 그 实效性을 제고시키는 한 手段으로서 新聞이나 放送 등 매체를 利用하는 것도 의의있다고 본다. 여론의 형성을 통하여 法的 实效性을 높힐 수 있기 때문이다. \*